

과테말라 ‘역사적 진실규명위원회’의 권 고 사 항

☆ 목 차 ☆

| | |
|----------------------------------|----|
| 1. 서문..... | 1 |
| 2.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 | 3 |
| 3. 보상조치..... | 4 |
| 4. 인권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문화를 배양할 조치..... | 11 |
| 5. 민주적 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 15 |
| 6. 평화와 국민화합을 촉진시킬 기타 권고사항..... | 26 |
| 7. 권고사항 이행을 촉진시키고 감시할 담당기구..... | 27 |
| 8. 유엔에 대한 요구사항..... | 30 |

(譯註 : 과테말라 정부와 과테말라 민족혁명연합<URNG>은 1996년 12월 4일 오슬로에서 내전종식에 합의하고 협력협정에 서명했다. 양측은 이어 동년 12월 29일 과테말라 대통령궁에서 평화협정에 서명함으로써 1997년 7월 위원 3명과 실무자 272명으로 구성된 진실위원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위원회는 9권에 달하는 보고서를 1999년 2월 25일에 발표했다.)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팀)

과테말라 ‘역사적 진실규명위원회’ 권 고 사 항

1. 서문

오늘로 협정은 CEH (역사적 진실규명위원회, Comisión para el Esclarecimiento Histórico)의 세 가지 목적 중 하나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다. “위원회는 과테말라에 평화와 국민화합을 고취시킬 특별한 권고사항들을 공식적으로 제시한다. 위원회는 특히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고, 서로 인권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문화를 배양하며,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권고할 것이다.”

포괄적인 이권 협정 (the Comprehensive Agreement on Human Rights), 평화협정에 대한 확인과 수용 및 이행 일정에 관한 협정 (the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Compliance and Verification Timetable for the Peace Agreement), 과테말라 민족혁명 연합의 법적 통합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협정 (the Agreement on the Basis for the Legal Integration of the Guatemalan National Revolutionary Unity) 등과 같은 다른 협정들에서 명백히 언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CEH도 무장세력간의 갈등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조치를 위한 개략적인 권고사항들을 제시해야 한다.

CEH는 평화협정의 내용을 고려하여 권고사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 협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또한 그것을 널리 유포시키는 것이 민주적 법치의 기초를 놓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 때문에 CEH는 이 협정에서 확인한 공약들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믿는다.

권고사항 준비에 적용된 방법론은 CEH가 실시한 조사 결과와 여러 부문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광범위한 협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에 근거를 두었다. CEH가 1998년 5월 27일에 개최한 ‘권고사항에 관한 전국 토론회’에는 139개의 시민단체에서 400명이 참석했으며, CEH가 내놓을

기본적인 중요한 제안들에 반영할 사항들을 제시해주는 유용한 원천이었다. CEH에서 행한 개인적인 증언과 전술한 협의 과정 중에 표명된 요구사항 및 제언들을 끊임없이 참고하며 이 장을 썼다.

평화를 이뤄나가는 기본 틀 속에서 CEH에 위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CEH가 권고한 사항들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국가와 시민단체의 공동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권고사항으로 모든 과테말라 사람들이 차별 없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것을 기초로 해서 CEH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짜여진 권고사항들을 제시한다.

1.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
2.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조치
3. 인권을 상호 존중하고 지켜주는 문화를 배양하기 위한 조치
4.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5. 평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다른 권고사항
6. 권고사항 이행을 촉진하고 감시할 기구

무장세력간의 갈등 및 그와 관련된 폭력의 영향은 두 당사자들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었다. 희생자자가 어떤 부문의 사람들에서만 나온 것도 아니었다. 거의 모든 과테말라 국민들이 그처럼 널리 그처럼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된 폭력에 아래저래 영향을 받았다. 이 때문에 CEH의 권고사항은 기본적으로 과테말라의 일치를 용이하게 하고 수세기 동안 고통받아온 분열을 추방하려 하고 있다. 화해는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CEH는 과거를 아는 기초 위에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장 세력간의 갈등 및 그와 관련된 폭력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이제 단순히 희생자들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국민화합을 위한 주역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한다.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폭력과 참사들을 보고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 과테말라의 후세들에게는 더 밝고 더 좋은 미래를 가질 권리가

있다. 과테말라 국민들은 국민적인 공동사업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해야 한다. 영구적인 평화와 화해를 기초로 과테말라의 사회구조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국민들 가운데 진정한 국민적 일치의식을 배양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CEH는 이 권고사항으로서 폭력의 역사가 결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과테말라 국민들의 희망에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

2.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

오늘로 협정은 과테말라에서 발생한 동족상잔(同族相殘)에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귀하게 여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CEH는 개인적 및 집단적 역사기억이 국민적 정체성의 기반이라고 믿는다.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것은 이 같은 역사기억(historical memory)의 한 가지 기본적인 양상이며, 인간존엄성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한 투쟁을 정당화시켜 준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1998년 12월 29일 공화국 대통령이 호소한 용서와 1998년 2월 19일에 과테말라 민족혁명연합이 호소한 용서를 고려하여, CEH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희생자들의 존엄성

1. 과테말라 국가의 이름으로, 희생자들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기본목적을 가지고, 공화국 대통령은 과테말라 전(全)사회와 희생자들, 그들의 친척들과 그들의 공동체 앞에서 이 보고서에 기술된 행위들을 인정하고, 그 행위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국내 무장세력간의 갈등과 관련된 인권침해, 특히 군과 국가 공안부대가 저지른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것.
2. 공화국 의회는 희생자들의 존엄성과 명예를 재확인하고 그들과 친척들의 영명(令名)을 회복시켜 주는 엄숙한 선언을 발표할 것.

3. 과테말라 민족혁명연합의 전 사령부는 희생자들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려는 기본목적을 가지고, 과테말라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무장세력간의 갈등과 관련하여 과거 게릴라들이 자행한 폭력행위들에 대해 전(全)사회와 희생자들, 그들의 친척들과 그들의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엄숙하게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질 것.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4. 과테말라 국가와 사회는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희생자들을 기념할 것. 그 활동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희생자 기념일 지정.
- 나) 전국적인 차원과 지역 및 도시 차원에서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기념비 건립과 공원 조성.
- 다) 교육센터와 빌딩 및 주요 도로에 희생자들의 이름을 배정할 것.

5. 무장세력간의 갈등에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기념제와 기념식은 과테말라 국민의 다양한 문화적 성격을 고려할 것.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 당국은 기념물 건립과 공동묘지 조성을 마야 공동체를 기억하는 형태에 따르도록 촉구하고 허가해야 한다.

6. 무장세력간의 갈등 기간 동안 훼손된 신성한 마야 유적지들은 피해를 입은 공동체의 소망에 따라 복구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할 것.

3. 보상조치

CEH는 진실과 정의와 보상과 용서가 평화와 국민적 화해를 공고하게 하는 과정의 기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희생자들과 그들의 친척들을 위한 보상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이 과테말라 국가의 책임이다. 그 기본 목적은 희생자들에게 영예를 주고, 무장세력간의 갈등과

관련되는 인권침해와 폭력행위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장하며, 국가적 및 국제적 인권 기준을 존중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CEH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국가의 보상계획

7. 과테말라 국가는 정부와 공화국 의회가 취한 적절한 조치에 의해, 무장세력간의 갈등과 관련된 인권침해와 폭력행위의 희생자들과 그 친척들을 위한 보상계획을 시급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
8. 이를 위해, 정부는 무장세력간의 갈등에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국가보상계획을 촉진시킬 보상법안을 최단시일 내에 공화국 의회에 제출할 것.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보상계획의 일반적인 원칙과 구성, 수혜자의 범위, 기준, 수혜자 확인 절차, 지급 방식과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원칙과 조치

9. 국가 보상계획에는 평등의 원칙과 사회참여 및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정신이 내포된 일련의 조치들을 포함시킬 것. 그 가운데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들어 있어야 한다.

- 가) 물질적 소유물의 복원을 위한 조치. 특히 토지 소유권의 경우 가능한 한 훼손 이전의 상태로 복구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 나) 인권침해와 인도법(humanitarian law)을 위반한 직접적인 결과로 생긴 가장 심한 상해와 손실에 대한 배상 혹은 경제적 보상을 위한 조치.
- 다) 심리사회 재활과 보상을 위한 조치. 여기에는 무엇보다 진료와 지역사회 정신건강 보호 및 그밖에 법률적 사회적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 라) 인간존엄성의 회복과 충족을 위한 조치. 여기에는 도덕적 상징

적 보상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10. 폭력의 형태에 따라 그 보상조치는 개인적인 보상이거나 공동체적인 보상이 되도록 할 것. 공동 보상조치는 희생자와 가해자 사이의 화해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어느 한쪽에 오명을 씌우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집단적 인권침해와 폭력행위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위한 공동 보상조치는 지역 단위의 화해 촉진 계획이라는 기본 틀 속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직접적인 보상 이외에 다른 조치와 혜택이 희생자와 가해자를 구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11. 보상조치가 국가의 재건과 화해조치의 주요 기반 중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과테말라 사회가 국가 보상계획(National Reparation Programme)에 대한 정의(定義)와 실행과 평가에 능동적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할 것. 이 같은 참여는 유별나게 폭력행위의 피해를 심하게 입은 마야계 주민들의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공동 보상조치를 하는 특수한 경우, 보상조치의 우선권을 정하는 일에 수혜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수혜자

12. 도덕적 물질적 보상조치의 수혜자는 국내 무장세력간의 갈등과 관련된 인권침해와 폭력행위의 희생자를 (또는 그들의 친척을) 대상으로 삼을 것.

13. 보상계획의 목적으로 보아, 희생자는 국내 무장세력간의 갈등과 관련된 인권침해와 폭력행위에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간주할 것.

14. 개인적인 경제적 보상이 적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피해의 정도와 그들의 경제 상황 및 사회적인 취약성을 고려하고, 노인과 과부, 미

성자, 어느 모로 보나 불리한 조건에 놓인 사람들을 특별히 배려하여 수혜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

15. 보상계획의 수혜자는 분명하고 정의롭고 신속하고 접근하기 쉽고 폭넓게 참여한 기준에 따라 확인할 것.

보상계획의 인원구성

16. 보상계획의 이사회는 9명으로 구성하되, ① 2명은 공화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② 2명은 공화국 의회가 임명하며, ③ 1명은 인권 민원조사관이 지명하고, ④ 1명은 희생자 단체의 대표로 하며, ⑤ 1명은 인권단체의 대표로 하고, ⑥ 1명은 마야계 단체의 대표로 하며, ⑦ 1명은 여성단체의 대표로 할 것.

17. 상기 단체들의 대표 임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권 민원조사관이 지명한 사람이 각 단체를 소집하여 임명절차를 용이하게 할 것.

18. 보상계획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할 것.

- 가) 수혜 대상자들로부터 개인 또는 공동 신청서를 접수한다.
- 나) 사건 내용에 따라 수혜 대상자의 신분이 희생자인지 희생자의 친척인지를 사정(査定)한다. 이 보고서의 사건 부록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의 희생자들은 다른 조사를 더할 필요 없이 희생자 자격이 자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다) 과거에 희생자로 확인된 수혜 대상자의 사회 경제적 상태를 사정한다.
- 라) 전자(前者)의 사정을 근거로 하여 수혜자를 결정한다.
- 마) 관련 보상조치를 결정한다.

19. 국가는 평화협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진보적인 세제개혁을 전면 단행하여 국가 보상계획에 자금을 조달할 것. 이를 위해, 사회 비용을

재분배하고 군비를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재정의 주요 원천이 되어야 한다.

20.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국가는 국내 무장세력이 갈등하던 기간 중에 당사자들에게 군사적 재정적 원조를 제공한 국가들에게 국제적인 협력을 간절히 요청할 것.

시행 기간

21. 국가 보상계획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시행되어야 한다. 이 기간은 신청서 제출을 위해 정해진 기간과 특전을 할당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할 때 10년 이상이라야 한다.

강제 실종(Forced disappearance)

무장세력간의 갈등기간 중에 과테말라에서 반복된 관행으로 횡행하던 강제 실종 범죄의 규모를 감안하고, 그 실종이 감금된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장기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의 운명을 모르는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법적 행정적인 문제를 야기한 사실을 고려할 때, 실종으로 인한 고통과 분규가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매우 긴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국가 보상계획에 포함되도록 CEH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실종자 수색

22. 정부와 사법부는 시민단체와 공동 협력하여 강제 실종으로 알려진 모든 사건에 관한 조사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개시할 것. 동원될 수 있는 모든 법적 물질적 자원이 실종자들의 행방을 밝히는 일과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유해를 친척들에게 인도하는 일에 활용되어야 한다.

23. 과테말라 군과 전 과테말라 민족혁명연합은 국내 무장세력간의 갈

등기간 중에 발생한 실종자들과 관련, 그들이 갖고 있을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

요구사항: 실종자 수색과 관련하여, 이 문제에 관한 국제적 전문기구인 국제 적십자위원회(ICRC)가 수색활동을 담당하는 과테말라의 여러 국가 기관에 조언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한다.

실종되어 불법적으로 입양되거나 불법적으로 가족과 떨어지게 된 어린이들에 관한 특별 권고사항

24. 정부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포함하여, 실종된 어린이들에 대한 수색을 시급히 활성화할 것.

가) 실종된 어린이들을 수색하기 위한 전국위원회 설치. 이 위원회의 목적은 실종되어 불법적으로 입양되거나 불법적으로 부모들과 떨어지게 된 어린이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실종을 문서로 입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언과 요구: 전국 위원회는 인권 민원조사관(Ombudsman)과 인권 및 아동을 위한 민간기구 대표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UNICEF(유엔 아동 기금)와 ICRC 및 아동문제 전문 비정부 기구들의 자문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하며, CEH는 이들의 협력을 간절히 요청한다.

나) 법정과 사법재판소 및 외톨이가 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기구들은 이해 당사자들이 요구할 경우 어린이들의 서류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어린이들의 신원과 인종, 나이, 출생지, 현재의 행방, 무장세력간의 갈등 중에 입양되거나 보호조치 되면서 포기한 실명(實名)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쉽도록 할 입법조치 촉구.

다) 국내 모든 지역과 타국의 난민 수용소에서 스페인어와 모든 토착어로 이들 어린이들의 수색과 관련되는 활동과 조치들에 관한 광범위한 홍보운동 실시.

25. 홍보매체는 실종 어린이 수색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 줄 것.

26. 정부는 입양된 사람이나 그 친척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친부모가 알지 못하거나 친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입양에 대한 정밀 조사를 허용하는 비상 입법조치를 촉구할 것. 상기 정밀 조사는 반드시 입양된 사람의 의견을 고려하여, 양부모와 친족 사이의 애정 어린 관계를 촉진하고 입양된 사람에게 후유증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강제 실종으로 인한 법적 부재신분(*status of absence*) 인정

27. 정부는 강제 실종으로 인한 부재선언(declaration of absence)이 법적인 친자관계와 상속, 보상 및 그와 관련되는 다른 민권문제를 유효하게 하는 법적 범주(legal category)임을 인정하는 법률안을 준비하여 공화국 의회에 제출할 것.

적극적인 발굴 정책

CEH는 무장세력간의 갈등에 희생된 사람들의 유해발굴과 감춰진 비밀묘지를 어디서든 찾아내는 일 그 자체가 정의로운 행동이고 보상의 행동이며 화해의 길로 한 발짝 다가서는 중요한 조치라고 믿는다. 그것이 정의로운 행동인 것은 그것이 진실을 알 권리의 일부를 찾아주고 실종자의 행방을 알아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보상의 행동인 것은 희생자를 소중하게 대접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죽은 이들을 각자의 문화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매장할 권리는 모든 인간에게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하고, 또 이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는 비밀묘지가 상당히 많고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묘지도 있는 것을 고려하여, CEH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28. 정부는 적극적인 발굴정책을 개발하고 준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

인 발굴절차를 정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권고사항을 고려한 발굴법
안(Law of Exhumation)을 공화국 의회에 시급히 제출할 것.

29. 발굴절차는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존엄성과 문화적 가치관을 충
분히 존중하여 시행하고, 발굴절차가 하나의 사법절차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개인 및 공동 보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할 것.

30. 희생자들의 시신과 유해는 친척들에게 인도하여 그들의 독특한 문
화에 따라 품위 있는 장례를 치르도록 할 것.

31. 법의학 전문 민간기구의 작업과 유해에 대한 조사 확인 작업을 촉
진시키고 지원할 것. 상기 전문기구들은 인권 민원조사관과 공동작업
을 해야 하고 조사관의 사무실은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보관소가 되어
야 한다.

요구사항: 이와 같은 전문가의 활동에 수반되는 경제적인 경비를 감안할
때, 국제 공동체의 재정 지원과 기술적인 자문이 특별히 요청된다.

4. 인권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문화를 배양하는 조치

4. 1. 상호 존중하는 문화

보고서의 앞장에 반영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과테말라에서는 폭력의
문화가 발전되어 왔다. 그 결과 국민들이 서로 존중하지 않고 불신하
는 문화가 생겼다. 이 같은 문화는 분명히 관용과 상호 존중의 문화로
탈바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CEH는 평화협정이 과테말라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서로 관용해주는
평화로운 관계를 발전시켜 줄 기본 바탕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과
거를 알고 소화하는 것과 억제되지 않은 폭력의 원인과 규모를 아는
것, 아울러 인권을 존중하는 기본 원칙과 자기 방어의 메카니즘 및 분
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평화로운 미래를 공고히

다지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CEH는 국민적 화합과 화해를 위해 문화적 변화를 도모하는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은 평화를 위한 능동적인 교육정책을 통해서만 기대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과테말라의 국가와 토착민—특히 마야계 주민—사이의 관계에는 인종차별과 불평등과 배척이라는 분위기가 상존해 있었다. 이 같은 관계는 무장세력이 갈등하는 역사적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토착민의 개인적 및 공동체적 권리 보호와 복수 문화 존중 및 서로 다른 문화간의 관계 증진을 보장하는 조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 같은 것을 근거로 CEH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보고서 내용을 가르치고 유포시키기

32. 국가는 도덕적 명령이며 의무로서 이 보고서의 내용을 포용하고 과테말라 모든 국민들에 그 내용을 유포시키고 장려하기 위해 모든 창의력이 발휘되도록 지원할 것.

33. 이 같은 목적을 위해, 정부는 과테말라 시민단체들과 특히 토착민 단체 및 인권단체들과 공동 협력하고 과테말라의 사회 문화적 현실과 언어 현실을 고려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보고서를 유포시키는 운동을 촉진시킬 것.

34. 과테말라의 ‘마야 언어 아카데미’는 공적 자금을 지원 받아, 여러 나라말을 사용하는 과테말라의 특성을 존중하여 보고서를 다음과 같은 언어로 번역할 것.

- 보고서 전체가 적어도 5개 마야 언어, 즉 k'iche, kaqchikel, mam, q'eqchi, ixil어로 번역 출판되어야 한다.
- 보고서의 결론과 권고사항은 20개 마야어로 번역되어 문자와 구두로 유포되어야 한다.

35. 정부는 보고서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garifuna 와 xinca어로 번역하

는 사업을 지원하고 자금을 조달해 줄 것.

36. 초등과 중등 및 대학의 교육과정에 무장세력이 갈등을 일으킨 원인과 전개 및 결과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평화협정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각급 학교의 수준에 맞는 깊이와 방법으로 포함시킬 것.

상호 존중하는 문화와 평화를 위한 교육

37. 국가는 전국의 인권 민간기구들과 더불어 평화와 상호 존중의 문화를 촉진할 교육운동에 자금을 공동 지원하여, 다양한 정치 사회부문에서 상기 민간기구들이 이 운동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것. 이 운동은 민주주의와 관용과 인권존중 같은 원칙들에 기초를 두어야 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도구로서 대화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 운동은 세계 인권선언의 내용과 평화의 기본 원칙들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발전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38. 정부는 평화협정에 들어있는 교육개혁에 의해 관용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의식과 타인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킴으로써, 이념적 정치적 문화적 분극화가 빚어낸 분열 노선들이 일소될 수 있도록 할 것.

요구사항: 과테말라 지역에서 지금까지 전개된 활동을 고려하여, CEH는 미주기구(OAS)가 ‘문화적 대화계획’, 즉 ‘평화구축을 위한 자원 개발’(OAS/PROPAZ)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에 관한 권고사항을 실행하는 일을 지원해 주고 기술적 자문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세계적 차원의 전문성과 활동을 감안할 때,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UNESCO)가 이 과정에 가능한 모든 원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4. 2. 인권 준수

상호 존중하는 문화와 인권 준수를 강화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응호할 목적으로 CEH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국제적 옹호를 위한 메카니즘

39. 행정 및 입법 부문에서는 과테말라 국가가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제적인 인권기관들과 그 실행 메카니즘을 승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CEH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우선권을 주도록 권고한다.

- 개인의 고발을 접수하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 선택 의정서’.
- 개인의 고발을 접수하는 ‘고문방지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미주 인권협약 추가 의정서’ (“엘 살바도르 의정서”).
- ‘강제 실종에 관한 미주협약’.
- ‘국제 형사법원 규정’.

국제 인도법

40. 정부는 국제 인도법의 기준을 국법에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기관 종사자들, 특히 이 규범을 존중할 책임이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규범을 존중하도록 할 군인들에게 이 규범에 관한 교육을 정규적으로 실시할 것.

인권 옹호자들

41. 정부는 인권단체들과 우선 협의하여 특별히 인권 옹호자들을 보호해주는 입법조치를 추진할 것.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 관한 행정조치

‘포괄적인 인권협정’의 서명자들이 취할 조치와 의무의 중요성을 되풀이 강조하면서, 진압이나 혹은 처벌보다는 순전히 하나의 예방조치로서 CEH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42. 공화국 대통령은 헌법상 특권을 이용하여 자신이 감독하는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여, 무장세력이 갈등하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국가 보안부대와 군대의 장교들이 한 행위를 조사하도록 할 것. 조사 목적은 상기 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들이 했던 행위의 타당성을 국제 인권기구들과 인도법이 정한 최소한도의 기준에 비추어 평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43. 상기 위원회는 정직성과 민주화운동 경력이 이의 없이 인정되는 무소속 시민 세 사람으로 구성할 것.

44. 상기 위원회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절차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고, 어떤 경우에도 CEH의 보고서와 장교들의 신상기록을 유념하면서 이해당사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줄 것.

45. 그 결과와 인권침해 행위의 규모 및 가혹성을 고려하고, 유엔 인권 위원회의 초안문서 “불처벌 방지조치에 의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일련의 원칙들”(Set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Combat Impunity”의 내용에 비추어 행정조치를 취할 것.

5. 민주적 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5.1. 정의구현과 갈등해결의 전통적인 형태

5.1.가 정의구현

평화협정의 여러 조항에서 과테말라의 정의구현을 위한 제도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의 시민권 강화와 군대의 역할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Strengthening of Civil Power and the Role of the Armed Forces in a Democratic Society)에서도 이것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과테말라 국가에서 가장 큰 구조적 취약점 중의 하나”라고 기술하고 있다. 상기 협정을 이행하는 ‘사법제도 강화위원회’(Commission on the Strengthening of the Justice System)는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 포함된 최종보고서를 내놓았다.

CEH도 자체 조사결과 사법제도의 취약성과 기능장애가 CEH의 조사대상 기간 중 면책과 형법의 오용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또한 평화협정의 결과로, 공화국 의회는 ‘국민 화해법’(National Reconciliation Law)을 가결했다. 이 법 제1조로 보아 이 법은 “국내 무장세력 간의 갈등에 연루된 사람들의 화해를 위한 기본적인 도구”로 간주된다.

전자를 고려하여 CEH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평화협정에 관한 의무

46. 과테말라의 국가권력은 ‘민주사회에서의 시민권 강화와 군대의 역할에 관한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정의에 관한 그들의 의무 이행을 가장 중요한 의무로 여길 것. ‘사법제도 강화위원회’가 내놓은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권고사항, CEH가 자기 것으로 여기며 되풀이하여 말하고 있는 그 권고사항들은 에누리 없이 실행되어야 한다.

국민 화해법

47. 국가 권력은 ‘국민화해법’을 그 모든 규정대로 과테말라의 다른 법들과 관련시켜 시행하고 또 시행할 것을 요구할 것. 상기 법률에 의해 책임이 소멸되지 않은 범죄들, 특히 다음과 같은 제 8조의 “과테말라가 비준한 국제조약이나 국내법에 따라 시효가 없거나 형사책임이 소멸되

지 않은 범죄들은 물론 민족말살, 고문, 강제실종과 같은 범죄들”은 기소하고 재판하여 처벌해야 한다.

48. 국민화해법을 적용하는 관계조직은 인권침해와 폭력행위를 선동하고 조장한 사람들을 특별히 주목하여, 이들 범죄에 대한 그들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를 여러 모로 참작할 것.

자료접근권 (*Right to habeas data*)

49. 정부는 인신보호영장 청구권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명백한 절차로서 빨리 실제적으로 확립하고, 헌법 제 31조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공문서보관소에 있는 정보나 서류 혹은 다른 형태의 공적 및 사적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에 힘을 실어주는 법률안을 공화국 의회에 제출할 것. 이 법안은 또한 개개인과 그들의 종교, 정치단체 가입, 노조 활동, 사회활동에 관한 정보와 그들의 사생활과 관련되는 다른 자료들을 수집, 저장, 은익하는 행위들을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5.1. 나 전통적인 형태의 갈등 해결책

‘사법제도 강화위원회’는 “전통적인 분쟁해결 방법들과 국가의 재판제도를 망라하여 이 두 가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 일련의 권고사항을 최종보고서에 포함시켰다.

CEH는 그 보고서에서 개설(概說)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분쟁해결 방법들과 그 방법들을 적용하는 책임 있는 당국자들을 제거하려는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그들을 경멸하는 경향이 1980년부터 무장 세력간의 갈등이 끝날 때까지 거의 변함 없는 특징이 되어온 사실을 지적했다.

상기한 모든 것을 고려하고 ‘사법제도 강화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들을 실행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CEH는 특히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법적 통합

50. 관습법으로 알려진 법을 인정하고 과테말라의 법률구조 속에 통합 함으로써, 과테말라 헌법이 인정하는 권리와 국제 인권조약이 침해되지 않는 한, 사법제도와 전통적인 분쟁해결 방식이 그 원칙과 기준, 권리와 절차에 따라 정중하고 조화되는 관계를 정립하도록 할 것.

교육

51. 법을 가르치는 대학 및 다른 국가 교육기관들은 전통적인 분쟁해결 방식의 규범들에 대한 지식을 교육 프로그램의 뚜렷한 주제로 포함시킬 것.

52. 교육부는 관습법으로 알려진 법을 구성하는 관행들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가 포함된 자료의 발간을 지원할 것.

5.2. 시민권의 우위(優位)와 군대의 역할

인간의 존엄성

5.2.가 법적 개혁

무장세력이 갈등하는 동안 군기관원들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와 군사화의 직접적인 결과로 뚜렷이 약화된 사회구조로 보아, CEH는 민주체제 속에서 시민사회와 군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민간의 통치에 군이 복종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확립할 입법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조치에는 군사규범 채택, 인권존중을 촉구하는 헌법규정 준수, 법에 의한 징계, 군의 비정치적 역할, 군의 역할을 국방에만 제한하는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CEH는 또한 군의 정보활동이 인권상황과 민군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주었음을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CEH는 군대가 과거에 반민주적인 행동을 통해 저지른 심한 권력남용과 인권침해는 이 같은 정보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종종 비밀스런 작전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인정한다.

CEH는 어떤 명령에도 절대 복종하는 것이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가장 중대하고 가장 위험스러운 요소들 중의 하나라고 믿는다.

“이 같은 것을 근거로 CEH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53. 정부는 아래 54~59번의 권고사항을 실행하는 조치가 포함된 필요한 법률 개정안을 공화국 의회에 제출할 것. 이들 법안은 ‘민주사회에서의 시민권 강화와 군대의 역할에 관한 협정’에 정해진 바에 기초를 두어야 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

군 조직법 개혁

54. 대통령 및 부통령 소속 참모조직은 민주국가에서는 불필요함으로 폐지할 것.

군 관련법 개혁

55. 공화국 헌법과 평화협정에서 나온 개혁안에 따라 법적 도덕적 교의적 기준에 의거하여 새로운 군법을 기초하고 발효시킬 것.

56. 이미 공화국 헌법에 포함되어 있는 올바른 개념, 즉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결코 용납되지 않고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용납이 되는 징계와 복종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이 군법에 포함시키고, 무슨 명령이든 그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지워지는 것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군법에서 삭제할 것.

57. 군의 명령 불복종에 대한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

국가 정보기구에 관한 새로운 입법

58.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법률안을 공화국 의회에 제출할 것.

- 가) 민간 및 군 정보기관의 조직과 임무 및 한계를 분명히 정의하고, 후자에게는 군사 문제만 담당하도록 제한하고,
- 나) 국가 정보기구의 모든 양상을 국회에서 효과적으로 통제할 분명한 절차를 설정할 것.

59. ‘민주사회에서의 시민권 강화와 군대의 역할에 관한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관한 의무들;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을 승인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행할 것. 즉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 방법에 관한 법률’,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외교문제나 군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을 규제하는 법률’, 새로운 군의 역할과 조화를 이루는 군 참모부 정보국의 관할구역 설정, ‘민간 정보 분석국’의 구성 및 전략 분석관의 배치.

5.2.4 새로운 군사 독트린

60. 정부는 과테말라 군을 위한 새로운 군사 독트린을 마련할 것. 이 독트린은 내부 검토와 시민단체들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나온 것이어야 한다. 이 독트린은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라는 기본 틀 안에서 사회와 군의 적절한 관계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해야 한다. 이들 기본 원칙들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들어 있어야 한다.

- 가) 군의 기능은 주권의 수호와 국가의 독립 및 영토의 보전이다. 군의 조직은 계급조직이며 법 테두리 내에서 규율과 복종의 원칙에 기초를 둔다.
- 나) 군은 주권이 과테말라 국민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군은 이 주권의 행사에 의한 모든 사회적 개혁과 변화를 존중하고 헌법이 정한 절차를 감수하도록 해야 한다.
- 다) 군은 그 행동은 물론 그 법적 기준을 제도적 인권존중에 기초

를 두어야 한다.

- 라) 군은 헌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투표로 결정되는 정치권력에 종속된다.
- 마) 군은 모든 면에서 헌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바) 군은 비정치적이다. 군은 정당정치권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합법적으로 구성된 모든 정치세력을 존중해야 한다. 이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활동을 박해하거나 감시 또는 통제를 할 수 없다.
- 사) 군인들은 그들의 직업이 지닌 고유한 한계, 특히 군에 복무하는 동안 정당이나 노조에 가입하거나 일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제도의 비정치적 성격을 보존하기 위한 한계를 수용해야 한다.
- 자) 군인들은 총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그들의 투표권을 자유로이 비밀리에 행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현역으로 복무중일 때는 공적인 행동으로나 사회의 언론매체를 통해 그들의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없다.

61. 군인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은 다음과 같은 개념 및 기본원칙과 일치되어야 한다.

- 가) 군인은 국방에 복무중인 시민이다.
- 나) 군의 규율은 결코 법 테두리 밖이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엄격히 복종하는 개념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 다) 군의 명예에 대한 개념은 인권존중과 분리될 수 없다.
- 라) 단체정신은 높은 윤리기준과 일치해야 하고 정의와 사회봉사의 원칙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5.2. 다 군사교육의 개혁

62. 정부는 과테말라 군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을 앞에서 열거한 점들을 주제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

63. 과테말라 군에서 CEH의 보고서를 교육과정의 일부로 공부하도록 할 것.

64. 과테말라 군의 여러 교육기관은 교수진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하여 현재나 과거의 인권침해에 관여한 군인들을 교수직에서 제외시킬 것. 교수진이 엄격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최대한 지니도록 할 것.

65. 과테말라 군 교육기관의 민간 교수진은 민주화운동 경력을 인정받는 사람들로 구성할 것.

5.2. 라 군 관련 기타 권고사항

공무: 병역 및 사회봉사

무장세력이 갈등하던 기간 동안 내내 강제 징병과 차별적인 징병관행을 계속 남용하면서 거의 모든 마야계 공동체를 괴롭혀 왔던 것을 감안하고, ‘민주사회에서의 시민권 강화와 군대의 역할에 관한 협정’에서 의도한, 병역과 사회봉사를 규정할 공무원법이 앞으로 승인될 것을 고려하여 CEH는 이 법률과 관련, 특히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66. 병역에 대한 규정의 징병제도와 절차는 법률에 앞서 평등의 원칙을 엄격히 존중하도록 할 것.

67. 종교적 윤리적 혹은 철학적 신념 때문에 무기를 잡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양심적인 거부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강제로 무기를 잡지 않도록 하고 그 대신 다른 형태의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

68. 본인이나 직계 친족이 무장세력간의 갈등과 관련된 인권침해와 폭력행위에 희생된 자로서 징병연령이 된 청년은 병역을 면제해주고 곧바로 사회봉사를 하도록 배려할 것.

특수부대

69. 앞에서 말한 군사 독트린과 교육의 원칙에 따라, 군대의 교육 프로그램, 특히 'Kaibil학교'로 알려진 것과 같은 게릴라 소탕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은 근본적으로 깊이 있게 수정되어야 한다.

마야의 문화적 명성과 상징에 대한 존중

70. 무장세력간의 갈등 기간 동안 심하게 훼손된 마야인들의 문화적 정체성(正體性)을 존중하기 위해, 군은 이제 독특한 마야의 상징적 의미와 표현을 군 구조물과 부대를 위해 사용하지 말 것.

시민의 평화수호

국가 및 국제 평화는 모든 이의 책임이고 군대의 기본 의무는 평화 수호가 되어야 하는 세상에서, CEH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71. 군은 유엔기구나 미주기구의 권위하에 평화주도(主導)와 국제 안보에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

72. 군사 전문가들은 과테말라 군이 평화와 과테말라 시민을 위해 헌신하게 함으로써, 모든 과테말라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군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

요구사항: 과테말라 군에게 요구되는 것과 비슷한 과도기를 경험한 군대를 가진 나라들의 정부는 상기 5.2에 열거한 권고사항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술적 재정적 협력을 해주도록 요청한다.

5.3. 공안(公安)

'민주사회에서의 시민권 강화와 군대의 역할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

한 바와 같이, 공안부대의 구조조정과 전문화 및 부대에서 실시하는 법과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의 문화에 관한 교육의 주요 목적은 경찰의 역할을 진정한 사회봉사자의 역할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경찰력이 전적으로 민간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경찰의 모집과 선발, 교육과 배치에 있어서 과테말라의 다(多)인종적 성격을 존중한다는 것을 뜻한다.

중대한 인권침해와 사회에 대한 공안 임무의 전반적인 결함 때문에 과거의 경찰조직을 불신하는 것을 감안하여, 새로 탄생된 국립민간경찰(PNC)은 그들의 독트린에 따라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전문적이고 현대적인 경찰력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관련 국제기구들이 지니고 있는 인권과 국민의 자유 및 법치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원칙들을 최소한 지켜야 한다.

이것을 기초로 하고, 앞으로 경찰의 임무가 적절히 발전되어 나가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CEH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공안부대 독트린

73.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PNC는 시민단체들과 협의, 민간 공안부대의 독트린을 정의하여 마련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시작할 것. 그 독트린은 다음과 같은 것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 가) 어떤 형태의 차별대우도 없이 과테말라의 다인종적 성격을 존중하는 사회 봉사.
- 나) 경찰력의 민간성격 개발. 조직, 계급제도, 징계절차의 탈(脫) 군사화.
- 다) 철저한 인권존중. 인권을 침해한 동료에 대한 당연한 조사와 기소 및 유죄 판정.
- 라) 민주주의와 법치 존중.
- 마) 전 경찰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훈련의 지속적인 실시.

내부 통제

74. 내무부의 감독하에, PNC청장은 경찰의 사회봉사 득트린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거나 하고 있는 요원들을 경찰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고, 내부 통제나 검열을 위한 새로운 부서를 창설하기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할 것. 이 부서는 국민과 인권 민원조사관을 접촉하기 쉽도록 하고, 개인이나 단체의 전문적인 직권남용을 자율적으로 조사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할 것.

토착민의 참여

75. PNC청장은 토착민이 공안업무에 참여할 길을 실제로 개방해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할 것.

- 가) 경찰 후보의 최종 배치는 물론 학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2개 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배려.
- 나) 소집과 선발과정 및 다인종 국가의 현실에 적응시키는 과정에서 차별 배제.
- 다) 경찰학교에서 과테말라의 다(多)문화적 성격과 이(異)문화간의 조화에 관한 교육 실시.
- 라) 토착민 출신 경찰관이 국민과 접촉하면서 토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토착민의 제도 및 권위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촉진하며, 그들의 문화적 특성인 분쟁해결 형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의 경찰업무 조정.

자원

76. 국가 예산을 결정할 때, 정부와 공화국 의회는 국립민간경찰의 재정을 증액하여 적절한 교육, 현대적인 수단과 장치를 갖춘 장비, 품위 있는 근무 조건을 보장할 것.

PNC의 민간 성격

77. ‘민주사회에서의 시민권 강화와 군대의 역할에 관한 협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새로운 ‘공공질서법’은 어떤 형태의 비상사태에도 경찰의 민간성격을 고려하고, 군에 속하는 임무에 경찰력을 강제로 투입하지 않도록 할 것.
78. 평화협정에서 제안된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군의 기능과 경찰의 기능을 분리하는 데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고 군의 공안분야 참여를 극히 최소한도로 제한할 것.

6. 평화와 국민화합을 촉진시킬 기타 권고사항

CEH는 평화와 국민화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장세력이 갈등하게 된 원인과 결과를 알고 정면 돌파함으로써 과테말라의 사회적 인종적 문화적 분열에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과테말라 전국민의 사회참여와 공적인 의무수행에의 차별 없는 기여가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CEH의 보고서가 과테말라의 과거에 대한 조사에 근본적인 기준점이 된 것은 틀림없지만, 그 자체가 무장세력간의 갈등과 원인 및 폭력의 정도와 결과에 대해 해야 할 조사와 분석을 끝낸 것은 아니다. CEH의 보고서는 과테말라에서 계속될 조사의 강령이 되어야 한다.

과거에 대한 조사와 분석

79. 과테말라 국민은 과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를 위한 기초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갈등을 촉발시킨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계속할 것.

토착민들의 정치 참여

‘토착민의 정체성과 권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dentity and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에서 이미 정해진 공약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지 않는 CEH는 정부가 토착민의 사회참여와 정치참여를 촉진시키고 인종적 정체성과 밀착된 지방정부를 탄생시킬 의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이 같은 이유에서 CEH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80. 여러 가지 직책과 관련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춘 토착민 전문가들에게 공직과 국가가 채용하는 기타 직책에 참여할 여지를 충분히 마련해 줄 것.

81. 전항에서 말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전술한 토착민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과 전문화를 위한 보조금 제도를 마련하고 재정 지원을 할 것.

인종차별정책과 토착민 예속화 정책 배제

과테말라의 국가와 토착민—특히 마야계 주민—과의 관계가 인종차별과 불평등 및 배척의 분위기 속에서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고 이것이 무장세력이 갈등하게 된 역사적 원인들 중의 하나인 점을 감안하여, 토착민의 개인적 집단적 권리보호와 문화적 복수성 존중 및 이(異)문화간의 관계 발전을 보장할 조치들이 절실하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을 근거로 하여 CEH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82. ‘토착민의 정체성과 권리에 관한 협정’을 완전 무결하게 이행할 것.

재정 개혁

‘사회적 경제적 양상과 농민의 처지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ocial and Economic Aspects and Agrarian Situation)과 모든 과테말라 국민이 사회발전과 사회봉사의 개선에 기여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CEH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거듭 강조한다.

83. 정부는 국가의 자원 동원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를 촉진시켜, ‘사회적 경제적 양상과 농민의 처지에 관한 협약’에 정해진 대로 정당하고 공평하며 진보적인 재정개혁을 시급히 실행할 것.

7. 권고사항 이행을 촉진시키고 감시할 담당 기구

CEH는 CEH에 맡겨진 위임사항이 평화를 지향하는 기본 틀 속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 권고사항들을 실행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믿는다. 모든 과테말라 국민이 권고사항의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시민단체가 공동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CEH는 국가와 시민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후속조치 기구를 설치하여 권고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도와 주고 감시하게 할 것을 권고한다. 과테말라에서 평화와 화해를 공고히 다져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단체가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평화와 화해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감시할 책임은 과테말라에 있지만,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 같은 근거에서 CEH는 이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84. 공화국 의회는 인권위원회의 주도로, CEH의 보고서가 발간된 후 60일 내에 상응하는 입법조치를 통해, CEH의 권고사항 이행과 감시를 담당할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를 승인해 줄 것. “평화와 화합을 위한 재단” (Foundation for Peace and Harmony. 이후부터는 “재단”)이란 명칭을 가진 이 기구의 권한과 구성, 임명절차, 설립, 설치, 운영기간, 인적 물적 자원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권한

재단의 주요 목적은 CEH가 내놓은 권고사항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며, 재단은 그 권한에 속하는 다섯 가지 주요 활동 영역을 중요시할 것이다.

- “ 가) 특별한 권고사항의 직접 이행.
- 나)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한 후원과 원조.
- 다) 권고사항의 적절한 이행에 대한 감시.
- 라) 역사적 연구의 촉구와 지원.
- 마)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뒷받침해 줄 자금조달 지원.

구성

재단은 해당 법률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일하게 될 7명의 인사들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안배된다.

- 2명은 공화국 의회가 임명하며 소속 정당이 달라야 한다.
- 1명은 정부가 임명한다.
- 민주화 운동경력이 인정되고 평화과정에 헌신하는 무소속 1명.
- 인권과 희생자들을 위한 민간단체 대표 2명.
- 마야계 단체 대표 1명.

관계기관의 임명절차는 의회에서 법률이 제정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임명절차

공화국 의회와 정부는 각각 관련 인사들을 임명한다. (정부가 임명하는 인사는 평화부 장관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민주화 운동경력이 인정되고 평화과정에 헌신하는 무소속 인사는 유엔 사무총장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인권을 위한 민간단체와 마야계 단체의 대표는 각 단체에서 선출과정을 거쳐 선임한다. 이 선출과정은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무소속 인사가 마련하고 도움을 준다.

설립

재단은 이사 임명절차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설치

재단은 재단이 처음 구성된 후 아무리 늦어도 5개월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운영기간

재단의 운영기간은 설치한 날로부터 우선 3년으로 하고, 권고사항이 이행되는 진척상황을 참작하여 의회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적 자원

직원은 기본적으로 과테말라 사람이어야 하며, 조사분야와 인권옹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격자들을 물색해야 한다.

물적 자원

CEH는 유엔 연구사업 사무소(UNOPS)가 CEH의 기부자들과 협의하고 재단의 예산과 운영계획을 참작하여, CEH의 물적 자원과 계산 및 통신 자산을 CEH가 기부하는 방식으로, UNOPS가 재단에 양도해 주도록 부탁했다.

국가적 국제적 지원

재단은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 국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의한다.

8. 유엔에 대한 요구사항

CEH는 앞에서 열거한 권고사항들이 이행되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엔 사무총장이 과테말라 정전협정 검증단(MINUGUA)을 통해 검증단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다.

CEH는 또한 사무총장이 재단의 무소속 인사를 임명해주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유엔 기구를 통해 재단에 기술적 지원과 국제 공동체로부터 기부를 받을 길을 터줄 국제 기구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한다.